대구대학교 대학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간의
석·박사학위과정 학생 논문연구 공동지도 등에 관한 협약서

대구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.)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(이하 “DGIST"라 한다.)은 『대구대학교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간 연구교류 협정서(2007. 4. 23 체결)』에 의거 실무 중심의 전문 연구능력을 갖춘 석·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의 배출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대학원과 DGIST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.)가 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석·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을 공동논문지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학술교류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양 기관은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공동 인력 양성(논문지도, 연구개발지원 등)
2. 연구교류 및 학술정보교류
3. 실험실습 기기 및 장비의 공동 이용
4.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

제3조(운영원칙) ① 이 협약의 학사운영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② 이 협약의 공동인력양성을 위하여 석·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③ 이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과 DGIST 원장이 위촉하는 각각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④ 이 협약의 대학원생 인사관리는 DGIST 제반 규정에 따른다.
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교육과정운영) ① 교육과정은 “대구대학교 대학원교육과정운영에관한내규”에 따른다.
② 학위논문에 필요한 강의 및 연구실험은 DGIST에서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출강 및 논문지도) ① 대학원장은 DGIST의 연구원 중 겸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를 DGIST에 출강 요청할 수 있다.
② 석·박사과정의 학위논문지도는 대구대학교 교원과 겸임교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참여)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연구사업의 일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생) DGIST는 대구대학교 대학원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연수연구원) DGIST는 대구대학교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연수연구원(Post-doc)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시설 및 장비활용) 양 기관은 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10조(학술정보 교류)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.

제11조(자문) 양 기관은 상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상대기관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효력발생 및 협정서 소지)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상호 합의하에 효력을 정지할 때까지 지속된다.
② 이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.

2009. 7. 3.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대학원장 전 재 일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

DGIST

원 장 이 인 선

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188